

2015년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

2015년도 사회복지법인 『평화를 이루는 사람들』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 신청자격

- 우리나라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 기관
-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
- 기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단체
-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정하는 사업지원 신청제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

2 지원대상사업

-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직접 발굴사업
 -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 및 영유아보육지원사업
 -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
 -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인적·물적 지원을 통한 복구 및 의료지원사업
-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.
 - 정치적, 영리적 성격의 사업
 - 국가 및 다른 단체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
 - 비품/장비 구입비용이 사업비의 50%를 초과하는 사업
 - 1회성 행사
 - ‘평화를 이루는 사람들’의 설립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

3 사업비 지원 항목

● 기본방향

- 원칙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지원은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사업내용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함.
- 지원항목은 사업비 부분을 지원하며 예외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함.

○ 사업 신청 예산 중 사업비 지원항목 사업계획서 검토 후 지원

- 사업별 최대 지원금은 일천만원 (금10,000,000원) 을 원칙으로 한다.

○ 지원 제외 항목

- 인건비 (강사비,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비 등 포함)
- 시설 보수 및 건축비용
- 클라이언트가 수혜대상이 아닌 물품/비품 구입

4 사업추진기간

○ 2015년 1월 ~ 2015년 12월

※ [연속지원 안내]

- 사업의 성격과 성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할 수 있음.
- 단, 연속지원 사업은 사업종료 후 자생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고, 이는 매년 사업평가 및 실사와 다음 해 공모 시에 제출한 해당 사업단체의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결정함.

5 사업 신청기한 : 2014.10.13. ~ 2014.11.14(금) 18:00 까지

6 사업신청시 유의사항

○ 사업성격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규모 신청

- 불필요한 예산 신청은 더 많은 단체의 활동지원을 감소시키므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예산수립 시 반드시 사전 조사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.
- 예산 상한선에 맞추어 불필요한 세부사업이 추가되었거나 규모에 맞지 않게 예

산이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, 선정이 된 경우에도 예산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○ 중복지원의 제한

- 단년 지원사업 기관은 다시 신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만, 동일사업을 단순히 연장한 사업내용의 경우에 선정가능성이 낮습니다.

○ 신의에 기반을 둔 지원금 신청 및 집행

다음의 경우,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사업지원 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하고 지원금을 환수합니다.
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

-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타 기관에 의해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

-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

7 신청방법 :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E-mail 또는 우편 접수

8 제출서류

○ 신청공문(스캔하여 E-mail 또는 우편접수)

○ 지원사업 신청서, 세부사업 실행 계획서, 기관 소개서 각1부 (E-mail 접수)

○ 기타 사업계획서 관련 각종 증빙서류 (단, 의무사항은 아님)

9 문의처 :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사무국

(우) 137-927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15층

(전화) 02-2258-8341~2 / (전송) 02-2258-8346

(홈페이지) www.peacemakers.kr